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

(주)아산탕정대한제5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을”)는 “갑”, “을”간 기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다음 -

1.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 (보수) ②항1호 및 ③항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별지 1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p> <p>1. “갑”과 “을”이 체결 예정인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 28조에 따라 “을”이 임대부진에 대한 대책(시장상황,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매촉진대책수립 등)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중단된 수수료는 제2항 제2호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괄지급하도록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별지 1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p> <p>2. “갑”과 “을”이 체결 예정인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 28조에 및 35조에 따라 “을”이 임대 및 매각부진에 대한 대책(시장상황,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매촉진대책수립 등)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중단된 수수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갑”的 모리츠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괄지급한다.</p>
별지 2.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사유 (1)-4) 수정	4) “갑”과 “을”이 체결 예정인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	4) “갑”과 “을”이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40조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

2. 기타

본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

“갑”과 “을”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변경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붙임. 기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

2024. 10.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갑” (주)아산탕정대한제5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신덕호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철 (인)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

(주)아산탕정대한제5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을”)는 “갑”, “을”간 기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다 음 -

1.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 (보수) ②항1호 및 ③항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별지 1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p> <p>1. “갑”과 “을”이 체결 예정인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 28조에 따라 “을”이 임대부진에 대한 대책(시장상황,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매촉진대책수립 등)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중단된 수수료는 제2항 제2호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괄지급하도록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별지 1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p> <p>2. “갑”과 “을”이 체결 예정인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 28조에 및 35조에 따라 “을”이 임대 및 매각부진에 대한 대책(시장상황,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매촉진대책수립 등)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중단된 수수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갑”的 모리츠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괄지급한다.</p>
별지 2.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사유 (1)-4) 수정	4) “갑”과 “을”이 체결 예정인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	4) “갑”과 “을”이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자리츠용) 제40조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

2. 기타

본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

“갑”과 “을”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변경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붙임. 기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

2024. 10.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갑” (주)아산탕정대한제50호원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신 덕 호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종 철 (인)

